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1. 마약관리과-2379(2019.11.15.)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밑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변경(추가)된 부분

3. 이와 관련,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유관단체에서는 동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시고, 각 시·군·구 에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주무관 **주민진** 사무관 **김익상** 마약관리과장 **최승진** 전결 2019. 12. 12.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2787 (2019. 12. 1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redjoo79@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